

충청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신복순

충청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오영탁 의원 등 7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5년 1월 10일

○ 회부일자 : 2025년 1월 14일

3. 제안이유

- ‘문화재’를 ‘국가유산’ 체제로 개편하는 「국가유산기본법」이 제정됨에 따라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»,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», 「무형유산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 및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음.
- 또한 국가유산청의 ‘문화재지킴이’가 ‘국가유산지킴이’로 명칭 변경되었으며, 「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」(2024.3.19.)이 개정 시행되고 있음.
- 이에, 국가유산 체제에 발맞춰 관련 조례인 「충청북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」를 정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법령에 따른 제명 변경

- 충청북도 문화재지킴이 진흥에 관한 조례

→ 충청북도 국가유산지킴이 진흥에 관한 조례

○ 법령에 따른 조문 변경

- “문화재지킴이” → “국가유산지킴이”(안 제1조~제9조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 「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」의 개정(시행 2024. 5. 17.)사항을 반영하여, 조례의 제명과 조문에 있는 ‘문화재지킴이’라는 용어를 ‘국가유산지킴이’로 변경하려는 것임.

○ 조례의 제명 및 조문 변경을 통해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맞춰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